

環境汚染解決에 總力を

盧大統領, 장단기對策促求·豫算대폭지원
國務總理를 委員長으로 汎部處의 推進機構도

盧泰愚대통령은 지난8월10일 청와대수질오염대책회의서 「6공화국에서는 물·공기·쓰레기등 환경오염문제를 반드시 해결, 국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살수있게 해야한다」면서 「특히 물문제만은 빠른시일내에 온國民이 조금도 염려하지 않고 마실수있도록 관계부처가 합심협력, 장단기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盧대통령은 「정부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하는 汎부처적 추진기구를 만들어 관련제도나 법령의 정비를 조속히 추진하고 부총리는 이번 예산편성시 환경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중앙과 地方의 환경관련예산소요가 최대한 반영될수 있도록 지원해줄것」을 당부하였다.

盧대통령은 또 「이번에 문제가 있는것으로 조사결과 발표된 일부 약수장에 대하여는 긴급한 해결책을 마련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수있게 하라」고 지시하고 「환경문제는 일단 오염되면 비용도 많이들고 회복이 극히 어렵기때문에 오염원인을 事前에除去하는 일에 모든 部處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趙淳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을 위시하여 內務·農水產·商工·建設·保社·文公部長官·環境廳長·서울特別市長등이 참석했었다.

水源地오염事犯法定最高刑求刑 民主黨 食水문제등을 最優先課題로

검찰은 8월11일 산업폐수등을 放流, 수원지를 오염시키는 각종 公害業所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업체를 「서민생활침해사범」으로 간주, 무기한 집중단속키로 했다.

검찰은 각지檢, 支廳별로 환경청, 道·市·郡직원 및 경찰등과 함께 실시되는 이번 단속을 통해 비밀배출구설치업체, 중금속등 악성오염물질 배출업체, 행정명령 상습불이행업소등에 대해 행위자는 물론 업주까지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하고 재판과정에서 법정최고형을 구형키로 했다.

한편 민주당 李仁濟대변인은 지난8월9일 수돗물오염문제에 언급, 「정부는 상수원보호가 국민건강에 직결됨에도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못한채 이같은 상황에 까지 이른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이에 대한 근본대

책을 세울것」을 촉구. 그는 또 「우리당은 앞으로 당과 국회차원에서 식수문제를 비롯한 공해추방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것」이라 하였다.

全國 7백여 淨水場 特別검사

민간차원의 「환경보호법국민推進協」 구성

정부는 수질오염에 대한 근원적인 대처를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환경보전위원회와 민간차원의 범국민단체인 「환경보호법국민운동추진협의회」(가칭)를 이달말까지 구성키로 했다. 정부는 또 수질오염의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 민간 전문가 주도하의 民·官합동조사반을 구성, 14일부터 9월12일까지 전국 7백2개 정수장 특별정밀검사를 실시하고 2단계로 9월 12일부터 10월12일까지 전국가정의 수도 3천개를 표본으로 추출, 관말급수전의 수질검사도 실시키로 했다.

靈光郡 鞍馬島등서 生態系조사

自然保護中央協, KBS등 調査團 53名이

자연보호중앙협의회(회장 李敏載)는 지난8월14일부터 21일까지 KBS수중탐사진과 보도진등 총53명의 조사단을 全南靈光郡 鞍馬島에 보내 沿海海中에서부터 섬전체의 生態系를 조사했다. 함께 參加했던 權世哲사무국장에 의하면 인근65개의 도서가운데 11개의 섬은 사람이 살고있었으나 54개의 섬은 모두가 無人島였다는데 鞍馬島는 섬이름 그대로 입구가 말안장같은 모양이었다고. 동협의회는 매년 여름 정례적으로 서·남해의 도서지역을 선택적으로 생태계의 변화와 현황을 조사하여 많은 업적을 기록하고 있다.

無公害 生물農藥 첫 개발

농촌진흥청 연구팀 4年余 연구끝에

살균효과가 뛰어나고 잔류 독성이나 생물에 대한 약해가 전혀 없는 무공해 생물농약이 31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개발됐다.

농촌진흥청 崔庸哲박사팀은 4년여의 연구끝에 개발한 고추역병 방제용 농약을 「AC-1농약」으로 명명, 국제특허를 출원했다.

崔박사팀이 개발한 「AC-1」 농약은 고추역병에 감염된 고추밭에서 살아남은 고추를 수집, 뿌리에 붙어 있는 1만여종의 미생물을 추출해 실험을 거듭한 결과

역병균에 탁월한 방제효과를 보인 길항세균(특정 미생물의 번식을 억제하는 세균)만을 모아 만든 것이다.

이번에 개발된 농약은 길항세균을 이용한 생물농약을 실용화한 것이 세계적으로 5~6종에 불과한 정도에서 이룩한 첨단분야란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6.31. 聯合·中央日報)

日, 「地球 환경研」 내년설립

—保全產業 기술개발 예산85억円—

지구환경보전을 위해 필요한 산업기술개발을 목적으로하는 「地球環境산업기술연구소」(가칭)가 내년에 일본에 설립된다.

연구소의 주요연구과제는 △ 地球温室化의 원인인 이산화탄소(CO_2)를 人工光合成을 통해 비료등 有用한 물질로 전환시키는 기술개발, △ 에너지 절약형 바이오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생산공정 개발, △ 오존층을 파괴시키지 않는 「제3세대 불화염화탄소」(CFC)와 미생물에 의해 분해 가능한 플라스틱개발 등이다. 日本통산성은 이 연구소에 외국기업과 외국전문가들의 참여를 요청 국제공동연구의 형태를 취할계획이다.

(매일경제 8.23)

大關嶺 숲속에 林間休양소 개설

강원도 명주군 성산면 어흘리 대관령 중턱의 울창한 산림속에 林間休양소가 개설돼 산림욕등 건강수련원으로 각광을 받게 됐다.

산림청 동부영림서가 국민레저 수요충족과 국민보건향상을 위해 지난해6월 1억7천1백만원을 들여 대관령 계곡 1천6백33ha의 울창한 국유림숲속에 통나무를 이용한 숙소3채등 시설면적 3만3천m²에 달하는 각종시설을 착공 지난 6월10일 완공했다. 이곳에는 청소년 야영장 2개소를 비롯 야외수영장, 통나무로 건축한 숙소3채(1백20명 수용) 야외강의장, 샤워장, 벤치52개 야외식탁10개, 철길건너기 10종류등 많은 체력단련시설이 마련되어있다. 산림청은 올해는 시범운영으로 수련을 목적으로하는 단체나 청소년·각급기관·가족단위등에만 시설을 무료개방하고 임간휴양소의 운영결과에 따라 조례등을 개정 내년부터 태백산일대 방대한 면적에 임간휴양지를 조성, 유료화해 개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브레이크마찰제 石綿규제

인체내에 흡수될 경우 폐암등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석면의 사용이 대폭규제된다.

환경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특별한 규제없이 건축자재, 자동차브레이크 마찰제·단열재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돼온 석면제품을 단계적으로 규제하고 우선자동차 브레이크 마찰제를 非석면제품으로 바꾸도록 상공부, 교통부등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내열및 보온성이 뛰어나고 내마모성이 좋아 브레이크 마찰제, 클러치 마찰판등 자동차 부속품과 슬레이트, 보온제, 내열제등 건축자재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석면은 분진상태로 인체내에 흡수될 경우 폐암, 석면폐증등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밝혀져 美國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70년대초부터 사용을 규제하고 이미 석면을 사용한 건물은 철거하는등 강력한 규제조치를 취하고 있다.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석면은 주로 캐나다에서 연간8만t 정도를 수입 그중 75%인 6만t은 슬레이트등 건축자재에 6%인 5천t이 자동차 브레이크 마찰제등으로 나머지는 방열목 및 기타 내열제품등에 사용되고 있다. 이번에 사용이 규제될 자동차 브레이크 마찰제등으로 쓰이는 석면의 사용량은 전체 사용량에 비해 매우 적지만 도시대기중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않을 것이다. (光州日報 6.21)

金剛山 식물분포 해방後2배 늘어

金剛山에는 현재 1천1백45種의 식물이 분포되어 있으며 이는 해방전에 비해 거의 2배로 늘어난 것으로 「政務院」기관지 「민주조선」에 의해 밝혀졌다.

金剛山의 식물분포는 바다의 영향과 자연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동쪽비탈면인 外金剛일대에는 참나무, 굽참나무, 갈참나무, 떡갈나무 등 참나무속 수종들과 일부 남방계통 식물들이 분포되어 있으며 서쪽지역인 內金剛일대에는 분비나무, 가문비나무, 부계꽃나무, 복작나무등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북부계통식물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고 전했다. (한국일보 6.22)

野生조류—植物탐사 레저 나와

자연보호에 영향주는 赤信號

심산유곡에서 솟아나는 약수터를 찾아나서거나 이름모를 산새와 자생식물을 채집하는등 새로운 레저를 즐기려는 이들이 늘고있다.

등산이나 낚시등 지나치게 일반화된 여가활동에 실증을 느낀탓도 있겠지만 다른 레저활동과 달리 주말 하루를 색다르게 지낼수 있다는 점이 커다란 매력으로 전문적인 동호인 그룹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름모를 식물을 발견하여 식물도감이나 회원들끼리의 토론을 통해 개별알꽃이며, 쥐다래등 식물의 이름과 모양을 알수 있고 탐사작업과정에서 오는 운동량과 정신집중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나 나약함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을 지녀 점차 인기 레저로 부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식물에 대한 아무런 사전지식이 없는 이들도 쉽게 참여할수 있어 자신이 그동안 보지 못했던 풀이나 꽃들이 숨어 있을 법한 곳이면 되는데 주왕산, 칠갑산도립공원, 설악산, 진도, 안면도등이 적당하며, 동물원이나 시내 한복판의 조류상에서 볼수 없는 소쩍새, 말똥가리, 노랑할미새 등을 관찰 하는것 외에도 건강에 좋은 삼림욕을 즐길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충청일보 7.1)

▲ 편집자註 : 자연관찰이 아닌 체집행위는 자연보호를 위협하는 행위라 할 수 있음.

南北韓 같은새도 이름 다르다.

—韓半島에 사는 393種 절반이 異名—

북한에서는 백로과의 황로를 누른물까마귀로, 겨울철새인 알락해오라기는 알락왜가리로 부르는등 남북한간의 새(鳥)이름이 크게 다른것으로 밝혀졌다. 경희대 元炳旼교수가 낸 북한의 조류학 관련보고서에 따르면 한반도에 분포하고 있는 조류 393종의 거의 절반가까이를 남북이 서로 다르게 부르고 있다는것.

동일한 학명을 지닌 이를 조류에 대한 남북한 간의 명칭(국명) 차이는 분류목록상 △目단위(아비목→다마지目)에서부터 △科단위(백로科→왜가리科) △개별종단위(황오리→진경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같은 조류에 대한 남북간의 이름차이는 외형상 쇠가마우지→가막가마우지, 흰멧새→눈빛멧새, 큰유리새→류리새, 메추라기→메추리, 곤줄박이→곤줄배기등 접두, 접미어의 차이에서 비롯된게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바꺼→티티새, 습새→꽉새, 느시→너화, 바라오리→호구니등 이름자체를 전혀 다르게 부르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같은 새를 두고 생긴 남북한간의 이같은 이름차이는 맞춤법이나 표준어의 차이에서 비롯됨은 물론 해방과 6.25를 겪으면서 양분된 국내조류학계의 배경과도 무관치 않다는게 학계의 일반적인 지적이다. (東亞日報 7.4)

세계적인 희귀새 八色鳥. 巨濟군 多羅山 10年만에

현란한 원색으로 몸치장을 하고 갑싸게 날아다니는 세계적 희귀조이자 천연기념물인 八色鳥가 자취를 감춘지 10년만에 지난 9일 慶南 巨濟郡 鶴洞 多羅山 중턱 해발 200m 지점 숲속에서 조류애호가 朴敬孝씨와 부산일보 鄭廣三사진부장등 취재팀이 八色鳥를 포착 활영에 성공했다.

자태가 매우 아름다워 「美鳥」라고도 불리는 이새는 검은 부리에 흰 눈썹, 코발트색 날개와 암록색의 등에 목에는 빨간점과 배색이 어우러져 있는 색깔이 화려하게 조화를 이루어 보는 사람의 눈을 현란하게 해주었다.

천연기념물 204호로 지정보호되고 있는 八色鳥는 제주도일원과 거제군 학동의 팔색조도래지(천연기념물 233호)로 서식지가 한정되어 있어 수효가 매우 적다. (부산일보 7.10)

희귀조 “매” 여의도 상공서 추락

—빌딩벽 부딪쳐 반신불수상태—

지난 7월8일 서울 여의도 상공을 날다 럭키금성빌딩 22층 유리창에 부딪쳐 추락, 반신불수가 된채 누워 있는 이 매는 천연기념물 제323호이기도 한 희귀조. 한국조류보호협회에서는 7월11일 이 매의 정확한 병명을 밝혀내기 위해 신촌 방사선과 의원에서 X-선 촬영까지 했지만 새에대한 전문지식이 없어 치료법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X-선 촬영결과 빠는 정상이지만 충돌 당시 신경에 손상을 입어 날개와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는채 초롱초롱한 눈망울만 굴리고 있는 상태.

地球온도 상승 거대한 반사경으로 해결

—계획실행20년…費用 전세계 GNP 6%에 해당—

스위스 슈리 연구소의 발터 샤이프리츠 교수는 영국의 잡지 내이쳐에 기고한 논문에서 「가까운 장래에 인류가 지구대기 온도를 상승토록 위협하는 공해를 줄이는데 있어 큰 성과를 거두는 것은 불가능할것 같다」고 우려하고 「연료소비나 열대림의 연소로 인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와 기타 가스는 태양열을 대기권내에 가둠으로써 대기온도를 상승케 해 지구를 온실화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절대온도 2.5도 상승을 상쇄시키기 위해서는 태

양광선을 3.5% 차단해야 하는데 이러한 작업은 거대한 가벼운 거울을 장치한 인공위성을 쏘아올림으로써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사이프리츠 교수의 이 기발한 계획에 따르면 4천5백만t무게의 대형 알루미늄 거울을 장치한 인공위성을 지구와 태양사이의 고정궤도에 배치한다는 것이다. 천문학자들은 이 지점을 「라그랑즈 점」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지구로부터 약 1백45만km 떨어져있다.

사이프리츠교수는 이 어마어마한 계획을 실행하는데는 20년이 걸리며 전세계1년 GNP의 6%에 해당하는 비용이드는데 이것은 전세계 1년 총군비와 맞먹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NASA의 고다드 우주연구소의 제임스 한센소장은 사이프리츠 교수의 이 모험은 공상과학속의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전혀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산성비 樹木으로 중화

공장, 화력발전소, 자동차등에서 배출되는 SOX(유황산화물) NOX(질소산화물)등이 빗물에 녹아들어 생기는 산성비로 인한 토양과 수목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수목으로 산성비의 완충효과를 볼수 있다는 연구발표가 나왔다.

임업연구원 오종환 연구관이 조사한 우리나라 산림 지역 강우의 산성화 실태와 수목의 완충효과를 보면 86년부터 88년까지 3년간 도시, 공단, 산악지, 산림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강우의 PH는 도심에 있는 홍릉 임업시험림 지역이 평균4.7로 가장낮게 조사되었으며 울산공단 주변깊이 5.1, 평창오지림이 5.7로써 평균치 상으로는 정상이었지만 최저 4.1까지 떨어질 때도 있었다.

측정한 초기강우(1~5mm) 총 2천5백12mm를 1mm단위로 구분하여 산성화 비율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홍릉 지역은 강산성 5.0%, 약산성 66%, 정상우 28.7%, 산성우 비율이 71.3%였으며 울산은 강산성 1.2% 약산성 64.4% 정상우 34.2% 평창 강산성 0.2% 약산성 27.2% 정상우 72.6%로써 산성비율로는 27.4%로 측정되었다.

수목의 R산성비 완충능력을 보면 수목의 잎은 산성비의 농도를 중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는데 H이온 농도가 높은 빗물이 잎에 닿게 되면 잎속의 칼슘, 마그네슘이온이 빗물중의 H이온과 치환되어 빗물의 산도를 떨어뜨리게 하며, 활엽수종이 H이온 감소효과가 있어 산성비 완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간사회환경신문 8.31)

10月부터 國立公園內 指定場所外 엔 취사행위 엄격히 규제

—내달부터 허용구역 지정—

10월부터 국립공원내에서는 밥을 지어 먹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날로 심해지고 있는 국립공원 주변의 환경오염문제를 막기 위해 내달부터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는 취사행위를 금지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리공단측은 현재 6개공원의 8곳밖에 없는 취사지역을 16개공원 48개소로 확대할 방침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또 외국에서와 같이 공원이나 산에 갈때 도시락을 가져가는 분위기를 조성,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20개 국립공원에서 나온 쓰레기와 오물은 모두 1만7천t에 달했다.

환경관계법 전면개편키로

환경보전법 없애고 분야별 6개법률 제정

정부는 환경오염을 막아 국민들이쾌적한 환경을 누릴수 있도록 하기위해 종전의 환경보전법을 폐지하고 대신 환경부문별로 6개법률을 제정키로 했다.

정부가 黨政회의와 경제장관회의및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오는 11일 개회될 정기구회에 제출할 6개 환경관계법률은 ▲환경정책기본법 ▲환경분쟁조정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방지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수질환경보전법등이다.

정부의 이같은 개별법화의 추진은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환경오염도가 크게 높아지고 있는 실정에서 환경보전법 하나만으로는 환경오염의 근본적인 방지, 분쟁해결등이 극히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신설될 환경정책기본법은 헌법에 선언적으로 규정된 환경권을 구체화하는 한편 환경오염이 현저한 지역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며 환경영향을 평가할 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토록했다.

또 수질환경보전법은 「특별기동단속반」의 운영을 강화, 적발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현행「3년이하 1천5백만원이하의 벌금」대신「5년이하 5천만원이하」의 무거운 벌칙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이밖에 ▲대기환경보전법은 공해배출차량에 대한 소환·수리제도·벌칙강화 ▲소음진동방지법은 비행기와 작업장의 소음규제·허용기준을 넘은 자동차의 강제운행정지 또는 폐차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